

제335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 10. 6(목)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88
제출일자	2022. 9. 23.
회부일자	2022. 9. 28.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이춘우 의원 외 9명

2. 제안이유

가. 경상북도 내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자살위험자 등의 실종 발생 예방과 민간의 자발적 협력에 의존하던 실종자 수색에 있어 민간의 첨단 기술 및 장비, 주민의 적극적 협조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나. 도내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지원대상을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와 자살위험자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드론 이용 수색지원, 실종자 조기 발견에 협조한 주민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실종자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기관·단체에 포상을 규정함(안 제8조)

4. 관계법령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6. 관련부서 협의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나.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다. 규제심사 :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7. 검토의견

☐ 조례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자치사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경상북도 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실종자와 해당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에서는 도내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실종자와 해당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규정함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실종자와 자살위험자, 드론의 정의를 각각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의미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서는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시행계획 수립·수립)에서는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
- 안 제5조(예방·지원 사업)에서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
- 안 제6조(재정 지원)에서는 제5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에서는 경상북도경찰청, 관

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규정함

- 안 제8조(포상)에서는 사업 추진 시 공로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위험자의 실종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경상북도의 의무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그 취지와 주민복지증진의 합목적성이 인정됨
- 경상북도 내 최근 3년간 실종자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음

연도	총 계		실종 아동등 (단위:명)						비고
			아동		장애인 (지적·자폐·정신)		치매환자		
	발생	발견	발생	발견	발생	발견	발생	발견	
2020	1,245	1,226	646	627	275	273	324	326	
2021	1,448	1,426	797	777	275	275	376	374	
2022.8.30	987	975	509	497	196	195	282	283	

- 현행 실종자 발생예방과 조기발견 체계는 시·군 경찰서의 학대예방경찰관과 여청수사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발생 초기에는 시·군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 등이 주변수색 등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 수색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실종자 발생시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

도움'을 얻어 수색활동을 하고 있으며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음

경찰서별	2021년도 주민동원 수색현황			비 고
합계	1,387명			
경 주	112	의 성	10	
포 북	105	청 도	15	
포 남	85	영 덕	30	
구 미	53	울 진	75	
경 산	53	봉 화	-	
안 동	80	예 천	118	
김 천	115	성 주	236	
영 주	26	청 송	12	
영 천	12	영 양	30	
상 주	102	군 위	-	
문 경	52	고 령	10	
칠 곡	56	울 립	-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조례는 실종자 발생 예방이라는 사전적 조치의무와 도 경찰청·관련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개인을 포함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실종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 제2조(정의)와 관련, '만 18세 이상이면서 비장애인인 실종자와 가출인*'의 경우는 본 조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바, 향후 실제 상황 발생시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현장의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만19세 이상은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이 실종된 경우 '가출인' 으로 지칭

참 고

가출인 및 자살자 현황

1> 경상북도 가출인 현황(2022.8.30. 기준)

2020년			2021년			2022.8.30현재			비고
접수	해제	미해제	접수	해제	미해제	접수	해제	미해제	
2,270	2,420	150	2,076	2,033	43	1,608	1,320	288	

2> 전국 자살자 현황(2022.6.30. 통계청 기준)

시도 별	자살자 수(명)					비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13,092	12,463	13,670	13,799	13,195	
서울	2,261	2,067	2,172	2,151	2,161	
부산	943	907	952	1,020	921	
대구	596	613	656	698	629	
인천	769	700	816	758	773	
광주	339	329	373	346	326	
대전	374	337	420	423	397	
울산	274	284	313	323	300	
세종	54	46	77	73	64	
경기	2,879	2,898	3,111	3,310	3,129	
강원	495	470	507	509	508	
충북	517	447	493	495	431	
충남	665	664	749	743	732	
전북	528	524	544	548	500	
전남	562	474	525	473	526	
경북	773	696	790	781	754	
경남	912	835	971	938	844	
제주	151	172	201	210	200	